

의안번호	제 286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3 월 일 (제 307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2년 2 월 23 일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
----------	-----

제출연월일 : 2012. 2 . 2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거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함(안 제31조의7)

나.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31조의8)

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안 제31조의9)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첨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1절(제31조의7, 제31조의8, 제31조의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절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제31조의7(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

제31조의8(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의9(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31조의7(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p>
<신설>	<p>제31조의8(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신설>	<p>제31조의9(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li> <li>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li> <li>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li> </ol>

현행	개정안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 關係法令拔萃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일부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유아교육법[법률 제10913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②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698호, 2011. 3. 7, 일부개정]

제23조(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①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교육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9]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개원에 따른 기관 운영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3. 비용추계의 결과(재원조달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본예산	2012년도 추경예산	합 계
합 계	0	645	645
자치단체	0	0	0
자체예산	0	645	645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 조직관리담당 지영애
연 락 처	043) 290 - 2556 E-mail : jya@cbe.go.kr



##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요액	비 고
유아교육활성화	253	
교원연수	22	
교과교육연구지원	7	
장학활동지원	11	
유아교육투자확대	68	
주요업무계획추진	31	
교육홍보활동	2	
직속기관기본운영비	251	
합 계	645	